

# 충남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 2013.03.01. 제정 >

제1차 개정 2014.09.01.

제2차 개정 2014.12.01.

제3차 개정 2017.02.17.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기공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论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석사연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2.17.)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적어도 1회 이상 국내·외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학위과정 중 수강한 과목에서 선택한다. (개정 2017.2.17.)

②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면서 지난 학기에 이미 합격한 과목을 선택할 경우 해당 과목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과목)**

①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7조(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합격기준)**

- ①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 각 과목별로 60점 미만을 과락으로 하고, 과락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제10조(보고)** 학과주임교수는 자격시험의 합격 결과를 계열학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제11조(논문지도위원회)** (신설 2014.12.1.)

-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수료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2조(외국어능력 기준)** (신설 2014.9.1.)

-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00점 이상 (개정 2017.2.17.)
  2. TOEIC 600점 이상(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모의 TOEIC 성적 인정) (개정 2017.2.17.)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유효한 강좌의 종류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2.17.)
-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충남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4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25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 ① 적어도 한 편의 학술지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 ② 지도교수와 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한다.
- ③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예외)**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다.

**제16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3.03.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9.01.)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외국어능력 기준을 규정한 제12조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01.)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논문지도위원회 기준을 규정한 제11조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2.1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술지게재/논문발표 점수 환산 방법

구 분	내 용		편당 점수
가 중 치	단독 : 100% 2인 : 70% 3인 : 50% 4인이상 : 30%		
학 술 지	국내	전기학회, 전자공학회	100%
		학술진흥재단등재 또는 등재후보논문지	50%
	국외	JIEE, IEEE, IET, JEET	200%
학술대회	국내	최대 50%까지만 인정	10%
	국외	JIEE, IEEE, IET	100%
		기타(4개국이상 참가)	50%

[별지 제1호 서식]

## 학술지게재 점수 계산표

[전기공학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

작성일 : 20 . . . 년 . . . 월 . . . 일

작성자 :

1.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

성 명		박사과정기간	20 . . . ~ 20 . . . (6년 개월)		
칭구논문제목					
지도 교수		전 공 분 야			
현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전 화 번 호	

2. 발표논문의 실적요약

구 분	심 사 대 상 논 문		기 타 사 항	
	건	점 수		건
국 외 논 문			국 외 논 문	
국 내 논 문			국 내 논 문	
국외학술회의			국외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총 점 수			보고서, 특허, 잡지기사 등	

3. 논문발표실적

구 분		논 문 명	저널명/ 발표기관	년월	저자수 (순서)	점수	관련도
논문지 게재	국외						
	국내						
학술회의 게재	국외						
	국내						
기 타 사 항							

- 점수와 관련도는 지도교수가 확인하고 기타사항의 내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음.

4. 특허실적

구 분	특 허 명	등록(출원)번호	등록일	등록자	점수	관련도
국내						
국외						

붙임 ; 증빙자료 ○부